

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공모

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

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
〈주무부처〉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
 〈전문기관〉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창의적·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

□ 공모방식: 자유공모 등

□ 지원계획 (2026. 9. 1. 연구개시)

○ 개인연구

사 업	사업목적 및 특성	지원대상	연구기간	연간 연구비	
핵심 연구	도전형	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, 새로운 개념 발견 및 정립 등 개척형 연구 수행을 지원	대학 이공분야 교원(전임·비전임)	1~3년	1억원 내외 (직접비 0.8억원 이내)
	전략형*	12대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 분야 등 국가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	대학 이공분야 교원(전임·비전임) 및 국(공)립·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	1~3년	2억원 내외 (직접비 1.6억원 이내)
	기본연구B**	연구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장기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안전망 구축	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	1~5년	0.7억원 내외 (직접비 0.56억원 이내)
	기본연구A				0.5억원 내외 (직접비 0.4억원 이내)

* 핵심연구(전략형)은 신청 서식에 포함된 『2026년도 핵심연구(전략형) 아젠다 목록』에 한하여 신청 가능

** 핵심연구(기본연구B)에 기초연구정책 등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형 과제(2과제 이내) 별도 공모

2. 2026년도 2차 신규과제 지원규모(안)

□ 사업별 선정 예정 신규과제 수

사 업		신규 선정과제 수
핵심연구	도전형	50개 내외
	전략형	60개 내외
	기본연구B	2,000개 내외
	기본연구A	

※ 연구비 및 신규과제 수는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핵심연구(전략형) 아젠다 중 "Science of AI"의 경우 9개 내외를 선정하되, 연구비 및 신청과제 수를 고려하여 변동 가능

3. 신청(수행) 자격 및 참여제한

□ 신청·선정 과제 수

○ (신청)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 가능

- (개인연구, 2차 신청) 핵심연구(도전형, 전략형, 기본연구B, 기본연구A) 중 1과제

※ 당해연도 교육부 학술연구혁신지원,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청자는 개인연구 2차 신청 불가

※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개인연구 2차 신규과제 추가 신청 불가(핵심연구(도전형) 제외)

사 업		공고시기	신청·선정 과제 수	신청 시기	연구개시일
핵심연구	도전형	'26.4월.	1개	'26.4월 말 ~ 5월 초*	'26.9.1.
	전략형				
	기본연구B				
	기본연구A				

* (p5) 6. 신청기간 참고

□ 신청 및 수행제한

○ 당해연도 교육부 학술연구혁신지원,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청자의 신청제한

- 당해연도 교육부 학술연구혁신지원 및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청자(연구책임자)는 개인연구 2차 신청불가

• 동시 신청제한 적용 대상 사업 범위

구 분		세부 사업	
교육부 소관	'26.6.1. 개시	학문후속세대지원	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
	'26.9.1. 개시	학술연구혁신지원	기본연구B(포용형), 보호연구, 미래도전연구, 글로벌R&D
		학문후속세대지원	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,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, 박사후국외연수, 박사후국내연수

○ **개인기초연구 1차 공모 선정자의 신청제한**

- 개인연구사업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개인연구 신규 과제 추가 신청 불가(핵심연구(도전형) 제외)

※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공모 평가 진행중인 과제의 연구책임자의 경우 신규과제 추가 신청 불가

○ **기존연구 수행자의 신청 및 수행제한**

- 개인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수행 가능

⇒ 개인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개인연구 신규과제(핵심연구(도전형) 제외)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

○ 개인연구 : 과기정통부 소관 우수연구(리더연구, 핵심연구(舊 중견연구)), 신진연구, 세종과학펠로우십, 생애기본연구(기본연구, 생애첫연구)
교육부 소관 이공학개인기초, 학문균형발전지원, 학술연구혁신지원, 학문후속세대지원

예외 사항

-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(2026.12.31.) 최종종료(연차/단계종료 제외)되는 경우
※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,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(3책 5공)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
- (핵심연구(도전형))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(연구개발과제 수 (3책 5공)에는 포함)

○ **정부R&D 공통사항**

- (참여제한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 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

예외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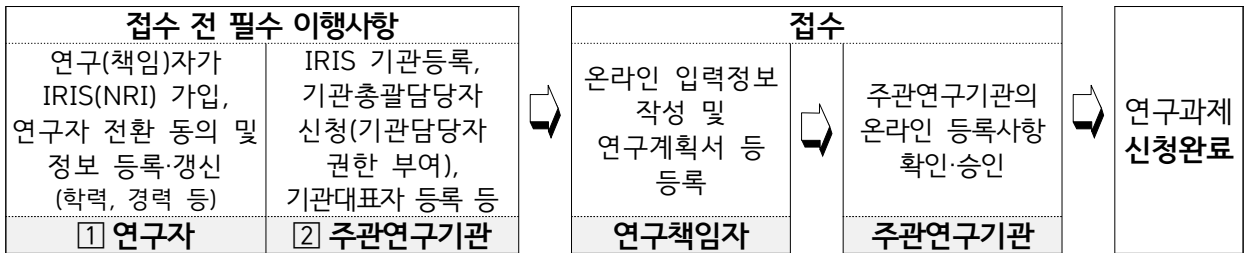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- (제7호에 따라)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(직접비+간접비)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('26년~과제 종료 시)
- ※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,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

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

- ▶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28., 2022. 12. 6., 2024. 2. 6.>
 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 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 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 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- 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-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 - 나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4. 신청절차

-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**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- 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- ※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

5. 평가방법

구분	1차 평가	2차 평가	
핵심연구	도전형	토론(전문평가단)	온라인 서면
	전략형	토론(전문평가단)	온라인 서면
	기본연구B	온라인 서면	-
	기본연구A	온라인 서면	-

- ※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※ 과제 접수 규모 등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평가방법(토론·발표·서면평가 등) 또는 단계별 운영 방식(예: 토론 후 발표평가 → 발표평가 단독 시행 등)이 조정될 수 있음

6. 신청기간

※ 유의사항 안내

-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“제출완료” 처리되어야 합니다.
(“계획서 작성중”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- **주관연구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**

구분		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	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
핵심 연구	도전형	2026. 04. 22.(수) 14:00:00 ~ 2026. 05. 06.(수) 18:00:00	2026. 04. 22.(수) 14:00:00 ~ 2026. 05. 08.(금) 18:00:00
	전략형		
	기본연구B		
	기본연구A		

7. 추진일정(안)

일 정*	추진내용
2026. 04. 03.	개인연구 2차 신규과제 공고
2026. 04. 22.	연구계획서 접수시작
2026. 05. 06.	연구계획서 연구자 접수마감
2026. 05. 08.	연구계획서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
2026. 5 ~ 8월	선정평가
2026. 9월	최종선정 및 연구개시 (2026.9.1.)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8. 기타사항

□ 논문 사사표기 안내

-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,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.

▶ 국문표기

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
▶ 영문표기

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) (IRIS 과제번호).

※ MSIT: Ministry of Science and ICT

※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
□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

-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,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
- ※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,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

□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

- 2018년도부터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 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
 - 교육운영 지정기관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<https://alpha-campus.kr/>)
 - 교육관련 문의전화: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(1588-5834)

□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-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(또는 학술대회)를 활용
-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
- ※ 연구(책임)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(선정·단계·최종)에 반영될 수 있음

□ 개인기초연구사업 민간연구소 연구과제 신청에 대한 관리 강화

-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9. 문의처

- 제도·정책 관련 문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(044-202-4534)
- 사업신청 관련 문의 : (공통) 한국연구재단 042-869-6392, 6393, 6397
-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
IRIS 홈페이지>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[붙임]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신청서식

- ※ 별첨(세부사업 신청요강 등)은 2026.04.15.(수)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- ※ 핵심연구(기본연구B, 기본연구A)의 제출 필수 서류인 '신규과제 신청자격 및 신분 확인서'는 신청요강 공지 시 서식 제공